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2024. 2.

교 육 부
지 역 인 재 정 책 과

목 차

I. 추진 개요	1
II. 2023년 주요 추진 성과 및 보완 방향	2
III.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 계획	6
1. 추진개요	6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정 절차	8
3. 예비지정 계획	9
4. 본지정 계획	11
IV. 추진체계 및 기타 사항	14
V. 성과관리	15
VI. 향후 추진 일정	16

[붙임1]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주요 변경 사항

[붙임2]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붙임3] 주요 규제혁신 법령·지침 개정 사항

I.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인구·산업구조 급변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 전략 전면 혁신
 - ※ 대학경쟁력 ('19) 55위 → ('20) 48위 → ('21) 47위 → ('22) 46위/63개국
- 지역 우수 인재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생태계의 허브 구축
 - ※ 스웨덴 말뫼시는 말뫼대의 혁신적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으로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도약
 - ※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붙임2]

2 추진 경과

- 글로벌대학위원회(글로벌위) 구성('23.3, 위원장 :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
-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시안)’ 발표('23.3)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23.4)
 - ※ 권역별 공청회 총 4회(세종·대구·부산·전북), 홈페이지·공문·메일 등을 통한 일반국민·타부처·지자체·대학 등 의견수렴, 총장협의회 등 대학 관계자 면담
-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확정안)’ 발표('23.4)
- 2023년 글로벌대학 신청 접수(~'23.5)
 - ※ 총 108개교, 94건 혁신기획서 제출(통합 추진 27교, 단독 81교)
- 2023년 글로벌 예비지정 대학 15개 발표('23.6)
- 예비지정 대학 대상 워크숍('23.8) 및 대학별 컨설팅('23.9) 지원
- 예비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수립·제출(~'23.10.6)
- 2023년 글로벌 본지정 대학 10개 지정('23.11)
 - ① 강원대·강릉원주대, ② 경상국립대, ③ 부산대·부산교대, ④ 순천대, ⑤ 안동대·경북도립대, ⑥ 울산대, ⑦ 전북대, ⑧ 충북대·한국교통대, ⑨ 포항공대, ⑩ 한림대
- 제6차 글로벌대학위원회 개최('24.1.30.)

II. 2023년 주요 추진 성과 및 보완 방향

1 | 글로컬대학30의 성과

□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에 혁신 공감대 형성

- 신청 가능 대학(166개교)의 65.1%인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 제출

- 신청 가능 대학 대비 신청 대학 수 : 총 166교 중 108교(약 65.1%) 신청
 - 국립대 31교 중 25교(약 80.6%), 공립대 6교 중 1교(약 16.7%), 사립일반대 66교 중 64교(약 97%), 사립전문대 63교 중 18교(약 28.6%)
- 유형별 신청 현황
 - 단독 신청 : 일반대 70교(국립대 16교, 사립대 54교), 사립전문대 11교
 - 공동 신청 : 13개, 27교(국립대 9교, 공립대 1교, 사립일반대 10교, 사립전문대 7교)

- 높은 참여율은 우리 대학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대학뿐 아니라 지역 사회, 기업 등 모든 사회가 대학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방증

□ 非학령인구 대상 대학 서비스 적극 발굴

- 취업을 연계한 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함께 온라인 한국어교육 등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방안 제시
- 기존의 학령인구가 아닌 재직자, 은퇴자 등 성인학습자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개편 모색

- 유학생의 지역 적응 및 정주 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 대학-지자체-산업체-지역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시니어교육(성인학습) 중점대학, 평생 고용 통합 플랫폼 구축, 대학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은퇴자를 위한 평생교육 공동체 구축 등

□ 정부가 보증하는 글로컬대학에 대한 기대와 지원 촉발

- 정부가 PVC(Public Venture Capitalist)역할을 자처하며, 담대한 혁신을 하려는 대학에 최대 1,000억원 재정지원, 규제 특례 우선 적용 등 파격적 지원 약속
- 지자체·지역기업·학교법인 재단 등이 대학의 혁신 파트너로서 혁신과제에 참여하고, 학교발전기금·글로컬대학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재원 대폭 투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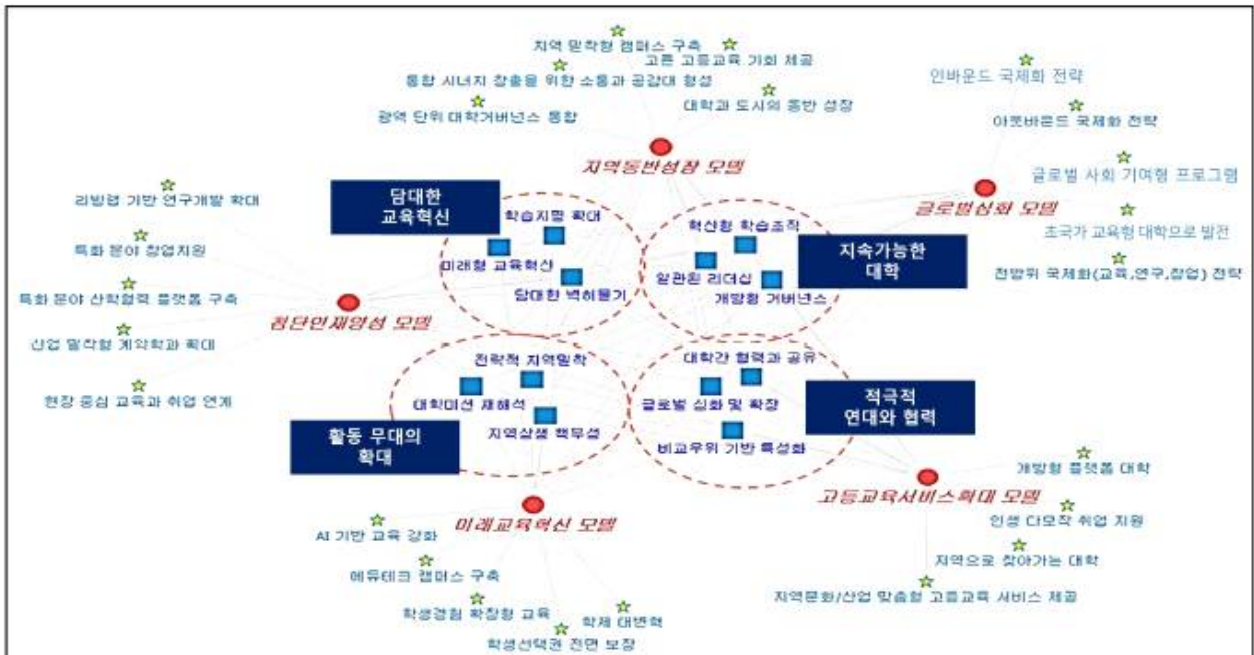
대학혁신의 기틀 마련

□ 대학의 혁신기획서를 대학혁신 전략 수립의 자원으로 활용

-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를 공개하여 다양한 대학의 혁신전략을 공유함으로써 혁신의 질적 상향 유도
- 제출된 혁신기획서를 연구하여 대학의 혁신전략을 분석하고 다양한 혁신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대학혁신에 대한 활발한 논의 촉발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서 분석을 중심으로(24.1.5)

[’23년 예비지정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 나타난 핵심 전략]



□ 대학의 혁신 지평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학규제 혁신 선도

- **(지역 연계)** 대학과 지역의 공동 운명체로서의 파트너십을 고도화 하며 “지역 참여 고등교육 생태계”라는 새로운 정책 지평 창출
 - 지역 주민 역량개발, 지역 산업 발전과 도시재생까지 혁신 플랫폼으로서 고등교육 무대 확대
- **(규제 혁신)** 기득권 해체와 개방적 대학 경영으로의 전환으로 다양한 혁신의 기틀을 마련할 담대한 벽허물기 노력 촉진
 - 글로컬대학 신청대학들이 혁신을 위해 개선을 요청한 과제 208건 (중복 포함 491건) 검토·개선 등 전방위 규제혁신 선도

- 최종 지정된 10개 대학이 스스로 제안한 혁신과제를 추진하며 대학 혁신의 모델을 창출하여 확산하고, 모든 대학의 혁신 선도

연번	대학명	구분	지역	유형	핵심 혁신 과제
1	강원대 강릉원주대	공동	강원	국립 국립	• 1도 1국립대학의 국립대학 거버넌스 혁신 모델 창출, 지역과 밀착한 캠퍼스 특성화를 토대로 강원권을 폭넓게 포괄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 담당
2	부산대 부산교대	공동	부산	국립 국립	• 국립대학-교육대학 통합 모델 창출, 첨단 인프라 및 교육청·기업 연계로 세계적인 에듀테크 거점 육성
3	안동대 경북도립대	공동	경북	국립 공립	• 지역 내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 창출, 경상북도 7개 교육·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공공형 대학으로 전환
4	충북대 한국교통대	공동	충북	국립 국립	• 국립대학을 통합하여 캠퍼스별로 지역 주력 산업 연계 특성화, 현장밀착형 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 추진
5	전북대	단독	전북	국립	• 대학-출연연 연계 및 대학-산업도시 조성 국제캠퍼스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28. 5,000명 목표)
6	경상국립대	단독	경남	국립	• 지자체, 지역 내외 대학·연구소·산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으로 도약
7	순천대	단독	전남	국립	• 지역의 3대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정원의 약 75%를 배정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 양성
8	울산대	단독	울산	사립	• 자산학 펀드 조성 등 대학의 재정 혁신 모델 창출,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멀티캠퍼스(UbiCam) 설치
9	포항공과대	단독	경북	사립	• 지속가능한 대학의 재정펀딩 혁신 모델 창출, 연구개발부터 제조·양산, 글로벌화까지 지역기업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글로벌 창업 퍼시픽 벨리 조성
10	한림대	단독	강원	사립	• 학과 간의 벽을 허물어 3대 융합 클러스터 중심 체제로 대학의 운영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으로 초개별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

※ 글로벌대학이 도출한 핵심 혁신과제를 대학혁신 모델로 타 대학에 확산 추진(‘24년 상반기)

- **(혁신방향)** 지역(Local)을 넘어 세계(Global)로 나아가는 글로벌대학이 될 수 있는 글로벌 혁신전략의 강화 필요(정책연구진)
 - 글로벌대학이 지역 내 출연연·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강화된 혁신모델 제시 필요(글로벌위)
 - 학생 선택권 확대, 취업 경쟁력 강화 등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제시 필요(언론)
- **(공동신청)** 대학 공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단순 연계·협력 수준 이상의 연합을 추진하는 대학도 신청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글로벌위)
- **(평가관련)** 국립대·사립대·전문대 등 대학 유형별·규모별 특수성 고려할 필요(국회, 글로벌위, 대학협의회 등)
 - '23년 글로벌대학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 혁신을 추진해 온 대학의 노력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각종 대학간담회)
 - '23년 본지정 평가 결과 미지정 대학은 혁신동력 유지를 위해 '24년에 한하여 예비지정 대학 지위 인정 필요(글로벌위, 평가위)
- ※ 단, 올해와 기본방향이 동일한 혁신기획서를 보완·개선하거나 발전시킨 경우에 한정
- **(성과관리)** 사전 계획을 근거로 예산 지원하므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과 부진 시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후조치 엄격 필요(국회)
 - 통합 추진 학교는 반드시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엄격한 패널티 필요(글로벌위, 2023년 본지정 평가위원장 등)
- **(지속가능성)** 글로벌대학으로 얻어진 성과*들이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전략 제시 필요(정책연구진)
 - * 혁신과제로 만든 연구소, 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거버넌스, 자체 펀딩을 통한 재정혁신 등

⇒ 2023년 추진 중 제시된 주요 의견을 2024년 글로벌 대학 지정 계획에 폭넓게 수용하여 사업 현장성 증진

⇒ 글로벌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엄정한 성과관리 병행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 성과관리 계획(안) 별도 수립·안내 예정

Ⅲ.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 계획

- 「글로벌대학30」추진방안(23.4)에서 제시한 문제의식과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성과관리 기본방향 유지
- '23년 글로벌대학 지정 과정에서 글로벌대학위원회, 평가위원회, 국회, 대학 등이 권고 또는 제안한 공통적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보완

1 추진 개요

- (근거)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제17조
- (지정 규모) '24년 10개 내외
 - ※ '24년 최종 지정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기간) 5년('24~'28)
- (지원)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 지원(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우선 추진, 지자체 및 범부처 지원 유도
 - 대학은 본지정 실행계획 수립 시 연차별 지원액 조정 신청 가능, 글로벌위는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산정
 - ※ ① 통합 추진대학은 통합에 참여하는 대학 수, 학교별 역할, 학교 규모, 실행계획,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조정(평균 지원액 약 1,500억원)
 - ② 연합 추진대학은 참여대학 수에 관계없이 단일 대학과 동일하게 예산 지원(연합 건당 최대 1,000억원, '24년 지원규모 연합 건당 약 50억원)
 - ※ 「글로벌대학30」 지원은 총 3조 범위 내 추진
- '24년은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 공·사립대학은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원
 - ※ 각 사업은 글로벌대학 지정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별 지원액 규모 결정
-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과 연계하여 지원 방식 조정 검토(세부사항 향후 별도 안내)

□ (신청자격) '24년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 신청대학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 또는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자격 필요

-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상이며, 특별법상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각종 대학은 제외

- 분교는 본교와 별도로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가능,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 본교 소재지는 예비지정 신청 시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정보 기준으로 판단

□ (공동신청) 신청자격을 갖춘 2개 이상 대학이 공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2개 이상 대학이 지원 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통합 추진대학의 경우,

- 협약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공식적인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기간 내에 통합대학 출범 완료

※ 통합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출 기한 조정 가능

- 2개 이상의 대학이 지원 기간 중 혁신적인 공동의 단일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연합 형태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본지정 평가 시 대학 정관 등 해당 사항을 반영한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종료 후에도 계속 연합대학을 유지하거나 통합 필수

※ [표1] 대학 간 연합의 수준과 유형 중 3단계의 거버넌스 모델 제시 필요

[표1] 대학 간 연합의 수준과 유형

1단계	낮은 수준 공유	대학의 자원을 타 대학이나 지역사회 등 외부 개방 일부 교과목에 대해 학생이 대학을 이동해 수업 들을 수 있는 학점교류나 교육과정을 MOOC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포함
2단계	부분적 연합: 높은 수준 공유	공유대학과 유사,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연합하되, 거버넌스는 기관 간에 합의된 한정된 영역과 대상에 대해서만 의사결정 가능(예시: 연합의 범위를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개발 및 운영하고, 공동학위나 이수증을 수여하는 것 등)
3단계	포괄적 연합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연합하는 체제로, 해당 거버넌스는 대학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의사결정의 범위가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까지 결정 가능)
4단계	대학 통합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한 개 이상의 대학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됨. 단일 거버넌스 하에서 단일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

※ 통합 또는 연합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담대한 혁신 추진 중 필요한 절차여야 함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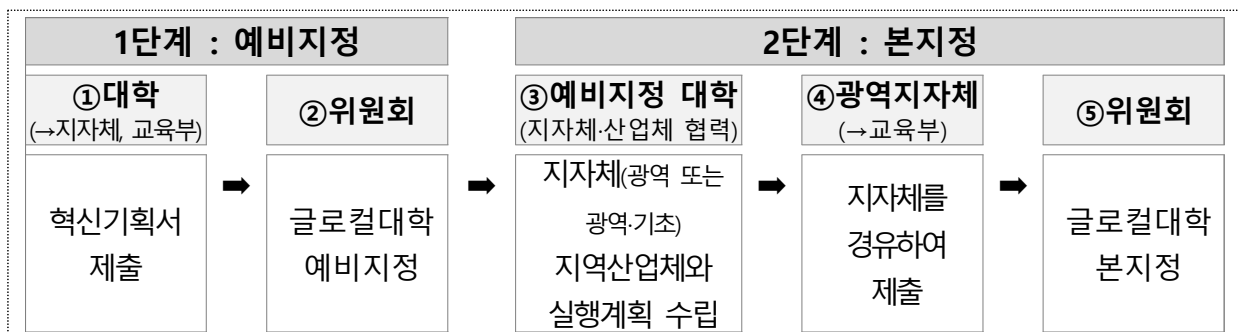
1 평가위원회 구성

- **(원칙)**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1단계(예비 지정)과 2단계(본지정)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 **(구성)** 각 평가위원회는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로 구성
- **(상피)**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최종 출신학교, 현 소속기관 등에 대한 상피제를 적용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
 -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심사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특정 평가위원 배제 요청 시 제외 검토
- **(운영)** 전체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인 모든 대학에 대해 평정 원칙, 단, 평가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평가 패널을 구분하여 운영 가능
 - 특히 1단계(예비지정)의 경우, 국립대·사립대·전문대 등 대학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 패널 구성 검토

2 지정 절차

- 1단계 예비지정 후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벌대학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대학 결정 및 대학별 최종 지원액 등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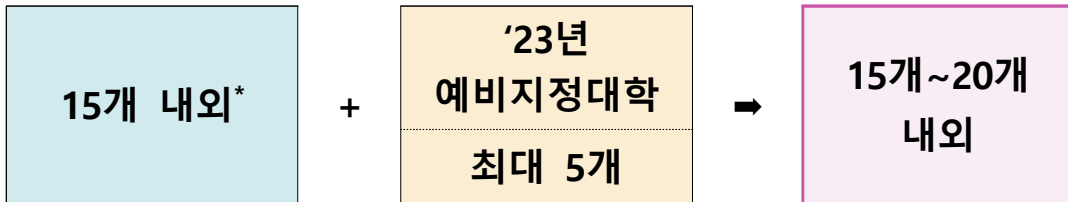
[표2] 글로벌대학 지정 절차



- 대학의 1·2단계 평가 제출자료에서 오류 또는 허위가 확인될 경우,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환수 등 조치 가능

1 예비 지정 규모

- (총 지정규모) 15개~20개 내외 * 본지정 목표 수(10개)의 약 1.5배 내외



- (**'23년 예비지정대학, 5개교**) '23년과 기본방향이 동일한 혁신기획서를 보완·개선하거나 발전시킨 경우, '24년에 한하여 예비지정 대학 인정
 - *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한동대학교
- 다른 대학과 동일한 일정·방식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23년 제출 혁신기획서의 비전·목표 등 큰 혁신의 방향은 유지하며 일부 수정 및 혁신과제 추가 가능
-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따라 새로운 혁신과제로 구성된 혁신기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2 예비 지정 신청 : 혁신기획서 수립·제출

- 대학의 혁신비전 및 과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혁신기획서(최대 5쪽) 제출
 - 신청서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및 대학 소재 광역지자체에 동시 제출
 -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비지정 결과 발표 후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예정
 - ※ 미지정 대학의 경우도 공개에 동의한 경우 혁신기획서 공개 예정
- 대학의 혁신 방향은 국립대육성사업, 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의 혁신 및 특화 방향과 일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 RISE, 평생학습 5개년 계획, 산학협력 기본계획,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부와 중앙부처 교육정책·제도, 대학규제 혁신 사항* 충분히 활용
 - * 주요 규제혁신 법령·지침 개정 사항[붙임3]

-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추진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에 따라 대학의 혁신과제들을 구체화하되,
 - 대학의 설립 목적과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비교 우위적 강점 분야의 특성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 고유의 혁신모델 제시
 - 설립 유형·규모 등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계획 마련 필요
 - * 예시: (국립대) 거버넌스 혁신 및 출연연 연계, (사립대) 사업종료 이후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재정 투자 구조 마련, (전문대) 평생·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 도출 등
-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성패는 결국 글로컬대학이 학생, 학부모, 지역, 산업계가 인정하는 대학이 될 것인지의 여부이므로,
 - 혁신기획서에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수요자 요구 분석이 반영될 필요
- 혁신기획서 외 별첨자료는 '23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 기존 별첨③ '대학 내·외 벽허물기 추진실적'을 '최근 3년간 대학의 주요 혁신 추진실적'으로 변경 검토

※ 검토 배경

- ① '23년 개별대학이 제시한 글로컬대학30 혁신과제는 무(無)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학이 시도한 혁신의 실험과 경험이 집대성되고 체계화된 것이라는 평가
- ② 글로컬대학30 혁신과제들은 교육, 지산학협력, 글로벌 혁신, 대학조직 혁신, 성과관리 등 일종의 패키지 혁신이므로, 혁신기획서 작성 시 그간의 혁신 성과에 대한 전반적 검토 필요
 - 평가위원들이 시계열적인 대학혁신의 이력·맥락을 이해함으로써 혁신과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보다 정확성 있는 평가 가능

③ 예비지정 평가

- **(방식)**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하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서면질의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추천)** 평가위원회는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대학 중 순위에 따라 본지정 대학수의 1.5배수 내외를 예비지정 대학으로 추천
 - ※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혁신성 점수가 영역 총점(60점)의 50% 미만인 경우 추천 제외
-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및 순위를 존중하여 글로컬 예비지정 대학 결정

[표3] 예비지정 평가 기준

영역	평가 주안점
혁신성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의 비전과 목표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 • 제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한국의 대학혁신을 대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산학협력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대학 안-밖,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가? • 설립 유형·규모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p>※ 대학 유형에 따라 특성 및 지역에서의 역할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혁신성 평가</p>
성과관리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혁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지역적 특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혁신계획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과 지역 내 다른 대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가? • 대학이 지역 혁신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 역할은 명확하며 실행 가능한가?

※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작성 지침은 계획 확정 발표 시 배포

4 | 본지정 계획

1 평가 대상 및 지정 규모

- (평가 대상) 글로벌대학 예비지정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학
- (총지정 규모) 10개 내외

2 본지정 신청 : 실행계획서 수립 · 제출

- (예비지정 대학) 대학-지자체(광역시 또는 광역·기초)-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최종 실행계획은 광역지자체로 제출

- 지자체 발전전략, 지역산업체 성장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지역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글로벌대학 연차별 실행계획 및 목표 설정
 - 비전 및 실행계획 실현을 위해 글로벌대학, 지자체, 지역산업체간 역할·기능 정립,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활용 방안 논의
 - 과감한 혁신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동의·설득 필요
- ※ 혁신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제출 필요(방법·양식 자율)

- **(지자체)** 글로벌대학에 대한 광역·기초단위의 행·재정지원 및 관련 산업 투자·육성,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등 글로벌대학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지원 의지 및 방안 제시
 - 대학과 지역의 기업, 연구기관, 다양한 혁신 주체 간의 연계 지원 및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서를 총괄 취합하여 제출
- **(교육부)** 예비지정 대학이 실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고등교육 전문가, 경제·산업계 인사 등 관련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컨설팅단 구성
 - 대학당 2~3인으로 구성된 전담 컨설팅팀을 통해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재정 투자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자문·권고

③ 본지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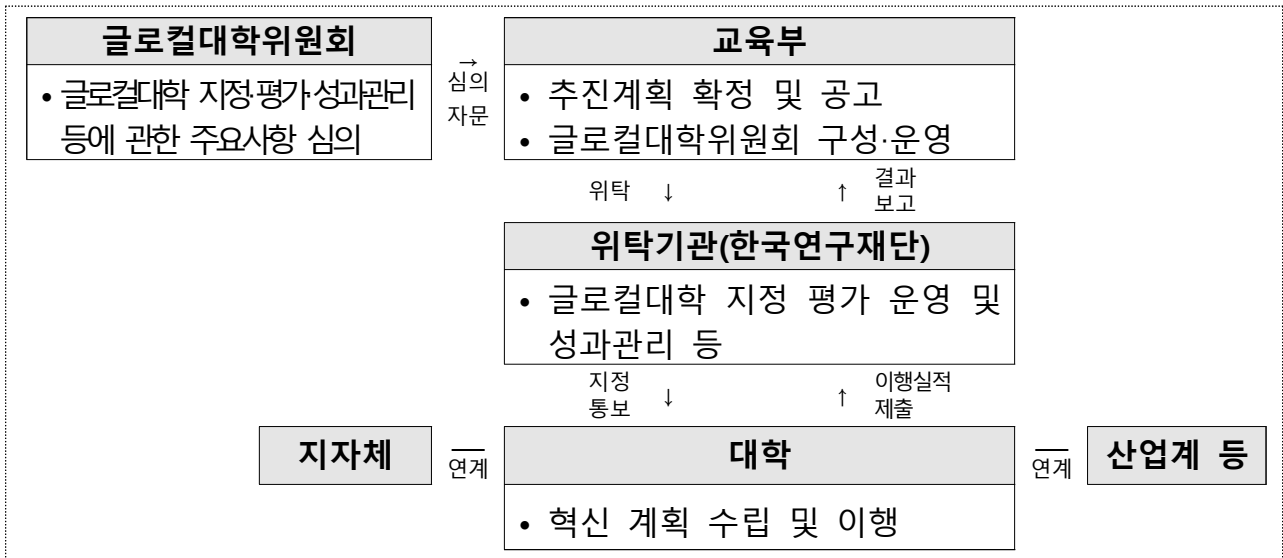
- **(방식)**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 ※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추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평균에 따라 본지정 순위 도출
 - 글로벌대학위원회에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및 순위를 존중하여 10개 내외 대학 본지정 추천
 - ※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본지정 대학 수는 변동 가능
- ⇒ 본지정 글로벌대학은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 대학'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상 우대

[표4] 본지정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평가 주안점
대학 실행 계획 (70점)	계획의 적절성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은 예비지정 때 제시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비전 및 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하였는가? • 글로벌대학의 비전 및 목표, 혁신전략은 지역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가? • 글로벌대학의 실행계획은 대학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타당성,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글로벌대학의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가? • 글로벌대학의 연차별 실행계획 및 재정 확보방안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성과 관리 적절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의 연차별 성과목표와 계획은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 글로벌대학으로의 성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 관리체제의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벌대학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목표(지역사회 기여도)가 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추진하려는 혁신과제들이 글로벌대학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벌대학과 관련한 지역 산업을 육성할 지자체의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글로벌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IV. 추진체계 및 기타 사항

□ 추진체계



- (글로벌대학위원회) 글로벌대학 지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심의, 최종 지정 대학 결정 및 대학별 지원액 산정 등
※ 최종 지정대학 및 대학별 지원 산정액은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에 보고
-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 수립·공고 등 관련 사항 총괄, 글로벌대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대학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성과관리 등
- (대학) 지자체,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 공유·확산 등 수행

□ 지원금교부 및 집행 등

- 글로벌대학 지정에 따른 지원금은 '국립대 육성 사업(국립대)',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공·사립대)' 사업비에 포함하여 교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글로벌대학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사업*에서 운용하는 사업운영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음
* 국립대 육성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V. 성과관리

- **(목표 설정)** 대학이 비전 및 지자체 발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감한 혁신과 변화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율 목표를 제안
 - 대학이 제안한 자율 목표는 글로벌대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
- **(성과 관리)**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하는 단계적인 모습(학과·구조 개편 등)을 기준으로 연차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 설정
 - 실행계획 및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학 자체 성과평가 후 글로벌대학위원회에 보고·심의, 필요시 전문가 평가 및 환류
 - 3년차, 5년차에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대학 실행계획 이행 및 목표치 달성 등 중간 모니터링 등 동행(同行)평가 실시
 - ※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초기 정착 집중 지원(지정 대학 별도 안내)
 - 모니터링 결과, 실행계획 미이행 또는 성과 미흡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가능, 필요시 사업비 환수 조치 검토
 - ※ 실행계획 미이행 또는 성과 미흡에 대한 대학 소명서를 제출받아 협약 해지 등 검토
 - ※ 특히 통합 또는 연합을 추진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목표 기간 내 출범하지 못하거나 사업 기간 종료 후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환수 등 강력 조치 검토
- **(대도약 이행 협약)** 글로벌대학과 교육부, 지자체, 산업체 간 각각 이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한 '대도약 이행 협약' 체결

❖ 대도약 이행 협약

- 글로벌대학, 교육부, 지자체, 산업체 간 대도약 이행을 위해 사전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5년간 각각 이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
- 대학은 5년간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와 범부처·지자체·산업체 지원 사항 등 역할을 명시

- **(영향력 평가)** 대학의 지역 산업·사회 협력 결과에 따른 영향력 (Impact)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대학별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 (예) 지역정주 인재 수, 지역 고용 정도,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력(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역에 창출한 GRDP, 소비규모, 지방세 납부액 등
 - ※ Impact 평가 핵심 지표 및 분석 방식, 공개 방법 등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

VI. 향후 추진 일정

- '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발표 및 공고 : '24.2.1(목)
-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접수 : ~'24.3.22(금)
- 예비지정 결과 발표 : '24.4월 중
 - ※ 예비지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24.4월 중
- 본지정 실행계획서 접수 : ~'24.6월 말
- 본지정 결과 발표 : '24.7월 중
- 본지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24.7월 말
- 본지정 결과 확정 : '24.8월 초
 - ※ 2단계 평가(본지정)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주요 변경 사항

내용	'23년	'24년 주요 변경 사항
신청 유형	단독 통합대학	[추가] 연합대학 , 공동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및 유지 필수 연합대학은 단일 대학과 동일하게 예산 지원 (연합 건당 5년간 최대 1,000억원)
평가 위원회		[추가] 전체 평가위원이 전체 대학 평정 원칙, - 단, 평가위원회 판단 따라 평가 패널 구분 운영 가능 - 특히 예비지정평가 시 설립 유형 따른 패널 구성 검토
예비 지정 규모	15개 내외	[변경] 15 + α (최대 5개) - '23년 예비지정대학 은 계획 방향 유지 시(일부 수정 가능) '24년에 한하여 예비 지정 인정 - 새로운 비전·목표에 따라 새로운 혁신과제로 구성된 혁신기획서 제출 시 일반적 절차 에 따라 평가 진행
별첨	③ 대학 내외 벽허물기 실적	⇒ [변경] ③ 최근 3년간 대학의 주요 혁신 추진 실적
예비 평가	필요시 대면심사	[변경]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대면심사
예비 평가 주안점	[혁신성] 규제혁신 방안 제시 [지역적특성] 실행 체계 구축 여부	[변경] 설립 유형·규모 등 대학의 특성 고려 계획 수립 여부 [변경] 지역발전전략 과의 연계 및 지역과 지역 내 다른 대학의 혁신 유도 여부 ※ '25년부터 전 시도 RISE 구축 예정
본평가 주안점		[추가] 혁신과제 들이 지원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계획 여부

비전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

목표

-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 허물기 ·
 -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
 -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 선도 ·
- ⇒ **마중물로서 글로벌대학 30교 내외 육성**

추진 전략

대학 외부
① **지원 전략 혁신**

① “선택과 집중” 전략

대학 혁신 성공모델 창출 지원을 통한 대학 혁신의 방향 제시

② 범부처·지자체간 장벽없는 지원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 범부처·지자체 재원 집중 지원

③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민간전문가(글로벌대학위원회) 주도 계획 수립부터 지정·평가·지원 추진

④ 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관리

대학이 부담없는 지정·관리 방식, 데이터 기반 효율적 성과관리

대학 내부
② **대학 구조 · 운영 혁신**

① 산학 · 지역협력의 허브화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연구·창업 등 추진

②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학외자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학사운영 및 내부 체제 개편

③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총장의 혁신 리더십 지원
지속가능한 혁신추진체계 구축

④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성과 분석 및 대국민 공개

대학 내부 대학 구조 · 운영 혁신 추진 전략

①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로 역할

- 대학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대학의 혁신 방향 설정
 -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융합 및 재구조화 등 교육혁신 추진
 -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창출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방식의 프로젝트 수업 등 교수학습 다변화
 - 대학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개발 연구 및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지·산·학 연계 등 협력 강화
- 대학의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지역 산업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

② 대학 안·밖,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유연한 대학 운영

- 대학이 지역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부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 거버넌스의 개방 추진
 - 대학 거버넌스에 지자체 및 산업계 등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다변화된 사회수요에 대응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한 학사 운영, 혁신을 주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부 체제 개편
 - JA(Joint Appointment) 교원*, 우수 교원 임용을 위한 교원 승진·인센티브 재설계, 무(無) 학과제도·융합전공·자기주도설계 전공(concentration), 기초교양 학부-전공탐색기간, 복수전공 활성화 등
- * (JA교원제도) 학과-학과, 대학-대학, 대학-산업체 공동 소속으로 임용하는 교원

③ 과감한 대도약(Quantum Leap)을 위한 혁신 추진 체계 운영

- 기존 다른 대학이 도전하지 않은 과감한 도전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계획 마련
- 중장기 혁신계획의 추진 및 실행 관련 의사결정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실행체계 마련
 - ※ (예시) 학칙으로 대학총장이 위원장인 (가칭)글로벌대학추진위원회를 두고 글로벌대학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
- 5년 지원 이후에도 대학이 스스로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전략 수립
 - ※ (예시) 산학연계 활동 및 창업 확산, 국내외 민간 지원재단 등과 연계, 자체기금 확충 등 대학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구조 마련

④ 대학의 운영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도의 투명한 공개

- 대학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위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또한, 대학의 지역 산업·사회 협력 결과에 따른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Impact)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검토

Ⅰ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Impact) 분석 Ⅰ

- 산업·경제·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계량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분석하는 보고서
 - ※ (예) 지역 정주 인재 수, 지역 내 고용 정도,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력, 지역에 창출한 GRDP, 소비규모, 지적재산권 수입액 등
- 해외대학은 이미 **대학의 지역사회·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영향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여 분석·공개**, 이를 통해 대학에 대한 대외 인식 제고



출처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Economic, Research, and Community Impacts(Fiscal year 2018)



출처 : Economic and Community Impacts of the University of Missouri System (January 2022)

[참고] 해외 대학의 대학-지역-산업 간 벽 허물기 사례

① 대학과 산업간 벽 허물기로 대학의 학사구조와 교수학습 전면 개편

- (예1)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학과 구조 개편 및 학위 프로그램 운영, 산업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육 제공
※ (해외 사례) 독일 미텔슈탄트대
- (예2) 대학이 지역 기업별 1대1 연구실 및 연구원(교수·학생) 제공, 기업 연구개발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교수학습(PBL)으로 전면 개편
※ (해외 사례) 미국 올린공과대

② 기존 산업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창업·창직 대학

- (예) 모든 학생에게 전 교육과정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교육, 대학 내 연구개발재단과 기술연구소는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연구, 자금조달, 마케팅, 계약관리 등 전반에 관한 것을 지원, 교수진을 실제 경영인(CEO)으로 구성
※ (해외 사례) 이스라엘 테크니온공과대, 텔아비브대학, 미국 뱁슨칼리지

③ 대학 간, 지역 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로 대학 교육·연구 기능 혁신

- (예1) 시도내 대학 간 통합하여 캠퍼스 간 자원 공유, 유사 학과 통합 및 중복 업무 재배치, 캠퍼스별 기능 특화
※ (해외 사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 (예2) 대학과 지역 연구기관 간 통합 또는 연계를 통해 대학 연구 기능 강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
※ (해외 사례) 프랑스 그로노블 알프스 대학, 이스라엘 텔아비브

④ 학문·학과 간의 벽 허물기로 학생 중심의 전공 체계로 전면 개편

- (예1) 학부생 전원을 무(無)학과 단일계열로 선발하고 학생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학업 적성을 탐색, 학생(수요자) 중심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과별 정원 폐지, 학과에서 설계한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추어 스스로 교육과정 설계
※ (해외 사례) 미국 브라운대
- (예2) 여러 전공·학문의 교수가 모여 하나의 강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융합교육 진행
※ (해외 사례) 미국 올린 공과대

⑤ 국내-국외 벽 허물기로 지역 특화 산업의 외국인 정주 인력양성에 특화

- (예1)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특화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어, 전문용어 훈련, 상호문화적응 훈련 등 외국인 유학생-지역특화산업 취업 연계
※ (해외 사례) 독일 미텔슈탈트대
- (예2) 다국가에서 국제학생을 전체 학생의 50% 이상으로 유치하고, 전 과목을 한국어·영어 이중 수업 진행, 전학생 100% 해외경험 제공
※ (해외 사례)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

⑥ 학령인구-非학령인구 벽 허물기로 대학 교육 수요자의 범주 확대

- (예1)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재직자의 재교육(upskill 또는 reskill)을 위한 학부 및 교육과정 신설·운영
※ (해외 사례) 미국 애리조나대
- (예2) 전통적인 학령인구가 아닌 근로자 학생, 지역주민, 은퇴자(50~60대)를 주 학생으로 입학시켜 평생교육 중심으로 전환
※ (해외 사례) 미국 서던 뉴햄프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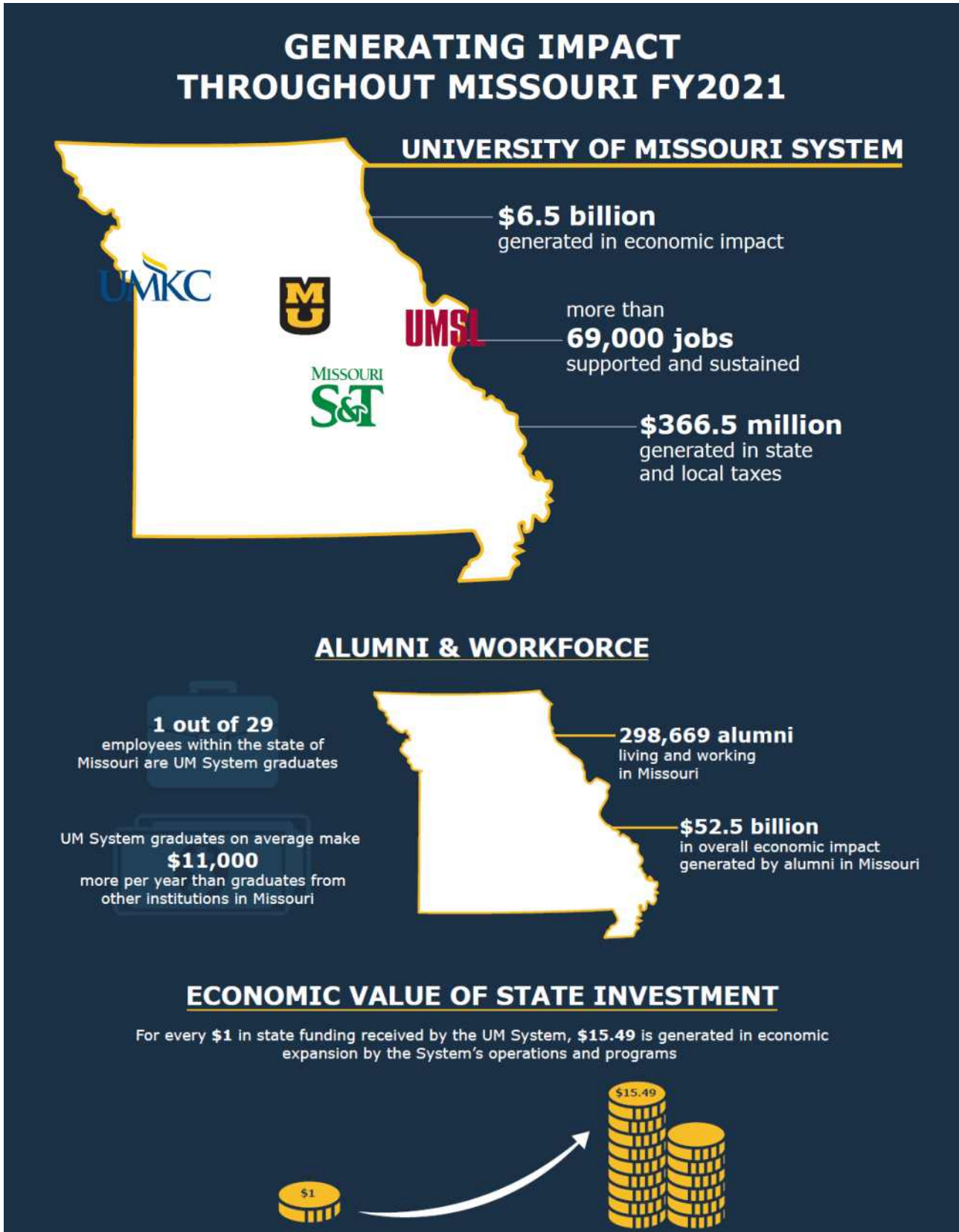
[참고] 대학의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Impact) 평가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대학의 영향력을 산출하는 보고서 ○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대학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작성 ○ 발간보고서 및 데이터 대국민 공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영향력을 기존의 추상적인 결과가 아닌 구체적 계량적 수치로서 확인하여 대학에 대한 인식 제고 ○ 대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무엇인지 대국민 공개를 통해 지역대학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 ○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서 각종 대학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환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핵심 지표 외 지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선정 - 학생들이 지역에서 소비한 규모, 교내 스피노프 수 - 방문객(관광) 수익, 지역민 대상 이벤트 규모 - 지역정주인재 수, 지역고용 정도(정규직 기준), -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력(혜택기업, 노동소득, 컨설팅수수액 등) - 지역에 창출한 GRDP, 소비규모, 지방세 납부액, 지적재산권 수입액 등 - 대학의 병원시설, 연구시설, 체육시설 등이 지역에 미친 영향력 ○ 대중이 인식하는 대학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조사(거주환경 등) - 빅데이터 상의 글로벌대학의 모습(워드클라우드 등) ○ 영향(Impact)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과 영향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 중간산출물 등 - 전략과 중간산출물 등의 상호 관계

※ 제시한 항목은 단순 예시로, 대학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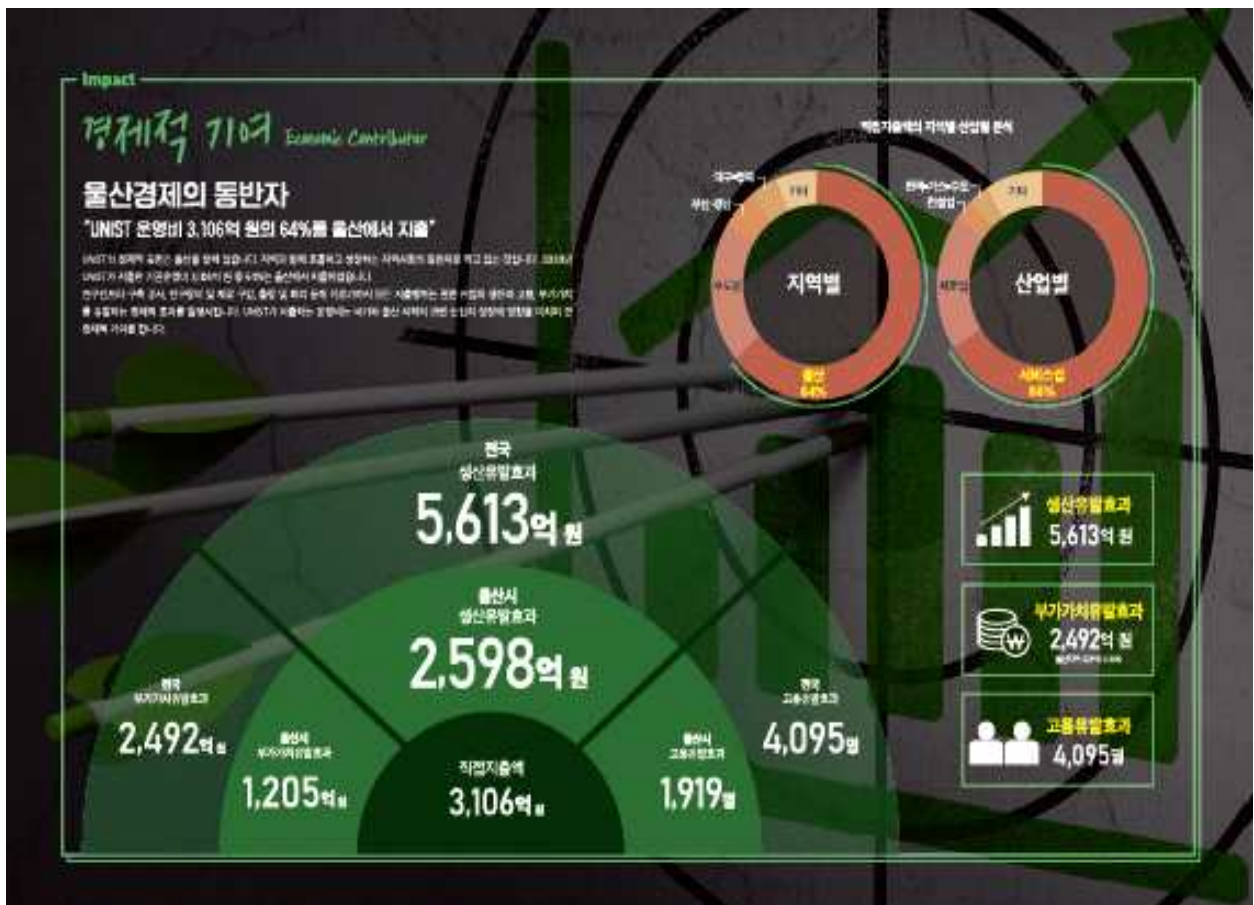
□ 대표적 사례

- (해외) University of Missouri System (Jan.2022)



※ 출처 : Economic and Community Impacts of the University of Missouri System(January 2022)

○ (국내) UNIST 이코노믹 임팩트



※ 출처 : 유니스트 이코노믹 임팩트('22.5월)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구분	주요 개선내용
대학설립 운영규정	4대 요건을 3대 요건으로 완화, 통폐합 유형 다양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내 학과(부) 원칙 폐지, 교원 교수시간(9시간) 기준 대학 자율화, 전과제한 폐지,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자율화 등
사립학교 시행령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근거 마련, 처분 신고 범위 확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의료과정운영학교가 운영 개시 이전에 인증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예·결산 절차 간소화, 법인회계 일반기부금 세입처리 가능, 회계 용어 현실화 등
국립학교 설치령	13개 국립대학 교명 일괄 변경(교명 앞 '국립' 문구 추가), 국립대학의 시설 설치 가능 위치 유연화, 국립대학 하부 조직 내 주요 보직의 직렬 제한 폐지, 학비보조 관련 규정 현실화 등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기준 고시	대학이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유보 하였다가 다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참여자격 기준 폐지 및 유보범위 자율화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지방대학은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비첨단분야에 대해서도 학과 신증설 가능, 첨단분야 공동학과 및 공동융합학과의 학교 밖 수업 규제 완화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통폐합 시 평가요건인 교지 요건 삭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외분교 설립 컨설팅 시 교육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삭제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개정('23.12.20.)	첨단분야 정원 증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 신기술 분야를 일원화하여 대학 현장의 혼란 방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행정처분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회는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감액 처분 근거 마련, 재허가 시 서류 간소화 등
학교법인(임원) 업무 안내서	중임 시 서류 제출 간소화, 이사장 선임 및 직원 임면권 명확화 등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	기본재산 교환·용도변경, 계속비 이월 등 회계기준 명확화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수혜제한 기준 폐지